

정보화추진위원회 규정



한국항공대학교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2014.4.22.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정보화추진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정보화 방향 설정 및 정보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 및 약간 명의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산정보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간사는 전산정보전략팀장으로 한다.<개정 2007.5.1. 2014.4.22.>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모든 행정처장과 도서관장으로 한다.

④ 임명직 위원은 전문성이 있는 관련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위촉한다.

⑤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획, 심의 검토한다.

1. 본교의 정보화 기본 계획 수립
2. 정보화 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보화 예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제반 사항

제4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와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제5조 (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6조 (회의록) 위원회의 의결된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 (관계 부서와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7년 3월 12일부터 적용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